

대구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54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549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가합8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피고, 항소인1. B 주식회사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권성우

변론 종결 2024. 11. 13.

판결 선고 2024. 12. 11.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가합859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050,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무단인출로 인한 손해금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그 나머지와 평일 추가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노임 상당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 패소부분인 위 무단인출로 인한 손해금 청구 중 제1심이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병원복 및 침구류 세탁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상무이자 원고의 중학교 동창이다.

나. 원고는 2010. 8. 12.경부터 2021. 1. 20.경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세탁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다. 피고 C, D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관리해 주기로 하면서 원고의 급여는 피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지급되었다.

라.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77호)은 2023. 5. 25. '피고 C, D이 공모하여 2013. 4. 10.경부터 2020. 4. 6.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급여 80,940,000원을 피고 회사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무단으로 송금하여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C, D에 대하여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C, D이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0. 4. 위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23노1979호), 2024. 12. 5. 위 피고들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649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급여 80,94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피고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소비하는 횡령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고(민법 제760조 제1항), 한편 피고 회사 역시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직무에 관하여 저지른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으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 80,94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8,813,38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126,620원(= 80,940,000원 - 48,813,38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C은 그들이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1. 7. 1.부터, 피고 D은 그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1. 7. 2.부터 각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7. 13.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부당이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착복, 횡령, 공동범죄, 연대책임 등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3. 5. 31.경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998,895원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채무가 소멸되었다.

2) 판단 가)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별지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998,895원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5,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 D이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해온 데에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위와 같은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입금된 자금이 원고의 위 손해에 대한 변제 용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위 입금내역 중 2016. 5. 11.부터 2019. 8. 16.까지 25회에 걸쳐 입금된 자금(500,000원 × 25회 = 12,500,000원)은 그 주기나 규모, 반복성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대가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③ 위 입금내역 중 2021. 2. 1.자 20,000,000원 및 2021. 2. 2.자 198,895원은 원고가 앞서 변제받았다고 자인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가 앞서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기숙사비 12,3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휴대폰요금 5,003,410원, F 보험료 4,222,200원, 우체국 보험료 1,321,300원, 냉장고 수리비 등 1,310,460원[= 56,500원(냉장고 수리비) + 100,000원(가불금) + 50,000원(떡 구입비) + 108,000원(냉풍기 구입비) + 220,000원(TV 구입비) + 600,000원(보청기 구입비) + 80,000원(장애인등록비) + 44,160원(간식비) + 36,000원(생일 답례품 구입비) + 15,800원(음료수 구입비)]을 원고 대신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복적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도록 하는 한편, 상계 금지라는 불이익을 부과하여 고의의 불법행위자를 제재함으로써 장차 그러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제재한다는 사회적 정의관념이 상계 제도에 반영된 규정이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수동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설령 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손병원

판사남명수

판사이도경

별지